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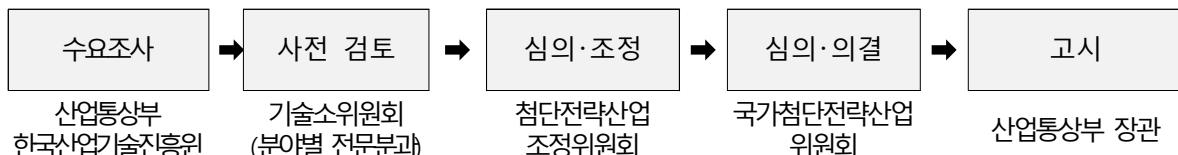
# 2025년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·변경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

첨단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,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국가·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, 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」(이하 “첨단법”)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,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과 변경 등을 위한 기술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2025년 12월 18일  
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

## < 첨단전략기술의 개요 >

-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정의(「첨단법」 제2조)
  -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·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·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(「첨단법」 제2조)
-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요건(「첨단법」 제1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)
  - ① 산업 공급망 및 국가·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
  - ② 성장잠재력 및 기술 난이도가 높은 기술
  - ③ 산업적 중요성 및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
  - ④ 수출·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기술
  - ⑤ 해당 기술의 유출시, 유·무형의 재산 또는 국가의 핵심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
-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절차



-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효과
  -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에 근거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\*을 지정 고시
    - \*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·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(「첨단법」제2조)
  - 지정된 기술·산업은 「첨단법」에 근거하여 육성·보호조치 실행

## 1. 신청 대상

- 기업, 연구기관, 전문기관, 대학, 사업자단체 등

## 2.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

- 신청 기간: '25.12.18(목)~'26.1.30(금) 18:00
- 신청 방법: E-Mail 또는 우편 제출(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접수)
  - ※ 파일형식: 기술개요서는 반드시 HWP로 제출(그 외 참고자료는 PPT, PDF 가능)
  - ※ 메일제목은 “[기업명 또는 기관명] 국가첨단전략기술 개요서”로 기재하여 제출
- 제출 서류: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·변경을 위한 기술개요서(양식1 또는 양식2)
- 제출처:
  - E-mail: [smiley@kiat.or.kr](mailto:smiley@kiat.or.kr)
  - 주소 : (06152)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 
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동향조사실(첨단전략산업지원단)

## 3. 설명회

- 일시 · 장소: '26.1.8(목), 14: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
  - ※ 회의장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(구 역삼동 701-7)
- 대상: 기업, 연구기관, 전문기관, 대학, 사업자단체 등
- 내용: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및 보호 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술개요서 작성방법 안내, Q&A
- ※ 설명회 참석을 원하시는 기업 및 기관 등은 붙임 양식3에 따라 참석자 명단 사전 이메일 제출
  - 제출방법: [smiley@kiat.or.kr](mailto:smiley@kiat.or.kr) / '25.12.29(월)까지 제출

## 4. 기타 안내사항

- 본 수요조사는 기술 지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, 지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
  - 수요조사시 제출한 기술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 또는 답변하지 않음
  - 최종 지정 결과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, 일선 현장 의견 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
- 제안 사항의 검토·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
※ 상기 제3자(전문가 등)에 대해서는 법적, 제도적 보안유지 준수의무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 예정
- 제출시 신청 기업 또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
- 제출 시한 이후 도착(우편제출 포함)은 접수하지 아니함
- 접수된 자료의 경우, 자료의 세부 내용 누락 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·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기술 검토과정에서, 필요한 경우 기술의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제출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
- 설명회 참가를 위해 제출한 참석자 명단은 설명회 개최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, 동 목적의 종료와 함께 파기 예정

## 5. 문의처

- 첨단전략산업지원단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동향조사실 김정아 수석연구원(02-6009-3581), 이은지 연구원(02-6009-3589)